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 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3
----------	-----

제출년월일 : 1993. 12.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94년도에 시행할 정감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동조례 제3조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 으로 개정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0분의 40" 을 "100분의 30" 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